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 12. 10 선고 2020가단11035(본소), 2020가단11042(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손해배상(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중철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완수

변론 종결 2020. 11. 19.

판결 선고 2020. 12. 1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43,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5. 16. 피고에게 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C에게 송금되어야 할 돈이 피고에게 잘못 송금되었다는 이유로 2019. 5. 19. 및 5. 21., 6. 11.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5. 11. 20.경 피고 소유의 소나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농산물(소나무)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금액 : 팔천만원 약 250주

수목 소재지 : 전북 익산시 D, E, F, G

상기 명시된 내용과 같이 계약하고 단풍나무(복자기) 2m짜리 3500주를 무상으로 주기로 한다.

1. 허가신청은 B이 하고
2. 을(원고를 지칭)은 허가 후 일시금으로 완불 후 나무를 캐간다.
3. 허가가 불허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4. 갑(피고를 지칭)이 계약을 무효로 하고 다른 곳에 매매시 배상한다.

허가신청시 계약금 2천만 원을 지불하고 잔금은 허가 후 6,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게 잘못 송금되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본소로써 구한다.

나. 피고 주장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익산시 H 임야, I 임야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42그루(이하 '이 사건 42그루'라 한다)의 소나무를 무단으로 굴취하여 반출하였으므로 위 42그루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 매매계약시 원고는 피고에게 단풍나무(복자기) 3,500주를 무상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았는바, 이에 피고가 2019. 5. 15.경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환 및 단풍나무 채무 이행을 촉구하자 이에 대한 변제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이득이 아니며,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① 위 42그루 상당의 부당이득금 13,440,000원과 ② 단풍나무 이행제공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3,000만 원을 배상할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반소로써 구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등의 변제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 15.경 음성메시지를 남겼을 뿐이고 그음성내용도 '전화 한번 달라. 전화 안주면 내가 고소장 넣을 테다'라는 진술에 불과할뿐으로 원고가 위 음성메시지를 듣고 일방적으로 그 부당이득금으로 이 사건 금원인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할 법률상 원인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본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9.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①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을 제1, 2, 3, 7호증,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수목소재지가 피고의 소유인 익산시 D, E, F, G(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 기재 토지'라 한다)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그런데 원고는 2017. 4. 21.부터 23.까지 익산시H 임야, I 임야(이하 위 임야들을 '이 사건 2필지 임야'라 한다)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피고 소유의 이 사건 42그루를 굴취하였던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소개 또는 중개한 J은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지적도를 보여주면서 원고에게 위 4필지 외에는 내 땅도 아니고, 동생과 사이도 좋지 않으니 다른 곳에서는 소나무를 캐면안된다고 분명히 말하였고, 이 사건 2필지 임야와 그 사이에 있는 E 토지는 웬만한 사람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2필지 임야와 이 사건매매대상 기재 토지의 경계를 식별할 수 있었던 상황인 점,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 소나무를 굴취하려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시굴조사를 해야 하고, 국가지정(등록)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를 접수시키는데 이때 첨부한 사업계획서에도 이 사건 2필지 임야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산림경영계획서 및 산림경영계획인가서에도 위 2필지 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7 15,16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42그루는 매매대상 수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한편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 을 제7,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상 기재 토지 중 G 지상에 소나무 47그루, F 지상에 소나무 65그루, D 지상에 소나무 28그루, E 지상에 소나무 63그루 총 203그루가 있었던 점(을7 17면), 피고는 감정서(을10)를 통해 마치 위 4필지 지상에 313그루의 소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나 위 감정서상 감정대상 토지에는 위 4필지 이외에도 K, L, M, N, O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313그루가 위 4필지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30.부터 2016. 8. 30.까지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익산시 D 외 4필지 상기 주소에 있는 수목(소나무) 240주 대금을 2016. 8. 30. 완불하였음을 확인한 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은 소나무 약 250주이었고 그에 대한 대금으로 8,000만 원을 산정하였는데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6. 8. 30.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매매대금을 최종적으로 소나무 240주에 대한 대금으로 정리한 사실, 수목 매매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량에 따라 매매대금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수량은 매매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인 점,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토지 지번에는 소나무 총 203그루만이 존재하여 240그루에 미달되었던 사실, 원고는 2017. 4. 21.부터 23.까지 이 사건 매매대상 기재토지 지상 소나무와 이 사건 2필지 임야 지상 소나무 42그루 합계 총 240그루를 굴취하여 수거한 사실, 피고는 적어도 2017. 4. 23.경에는 매매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나무가 굴취되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당시 원고에게 이를 항의하였거나 위소나무 상당의 가격배상을 구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상 허가신청은 피고가 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함이 맞다고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29.부터 2017. 4. 25.까지 허가비용으로 2,170만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는 위 42그루에 대한 굴취 혐의로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형사기소까지 되었고 2018. 8. 17.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원고를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2020. 4. 10.에서야 이 사건 반소장을 제출한 점, 원고는 피고에게 소나무 240그루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청구가 인정된다면 그 반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량부족으로 인한 담보책임으로 부족한 수량 상당의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점, 원고가 위 240주를 초과하여 굴취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2필지 임야 지상의 소나무 42그루에 대해서는 계약상 매매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240그루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42그루까지 포함한 대금이 교부되어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상당기간 동안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정산처리함에 대해 묵시적 동의 내지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②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P의 진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P은 원고의 지시로 경기도 연천군 Q에 있는 복자기 3,500주를 소외 R로부터 300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1m 내외의 복자기를 공급하였는데, 이는 증여이므로 증여자는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민법 제559조 제1항), 설령 매매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그 기간 내에 권리 행사나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이를 그대로 피고 토지 지상에 식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복자기의 이행제공 불이행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재